



#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배포

제 2019-180 호  
발송: 2019.11.19.  
회신:  
담당: 진로인성부

우)15010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-30, TEL: 031-8063-2902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화목함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애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.

**11월 19일(화) 아동학대예방의 날**을 맞아 관련 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나와 내 이웃의 자녀 모두 인권이 존중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.

## 1.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(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).

## 2. 아동학대의 분류

1) 신체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



### 신체적 징후

-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
-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, 골절 등
-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
- 담배 불 자국, 뜨거운 물에 잡혀 생긴 화상자국
- 겨드랑이, 팔뚝,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

### 행동적 징후

- 어른과의 접촉회피
-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
-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
- 부모, 귀가에 대한 두려움

2) 정서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·정서적 위협, 감금·억제·기타 가학적인 행위



### 신체적 징후

- 성장장애
- 신체발달 저하
- 언어장애
- 원형탈모 등

### 행동적 징후

-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
- 반사회적, 파괴적 행동장애
- 히스테리, 강박,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
- 극단행동, 과잉행동, 발달지연, 자살시도

3) 성학대 :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



### 신체적 징후

-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
-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
-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
-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
- 질에 생긴 상처나 굵은 자국 또는 흉진
-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
- 입천장의 손상, 성병감염 및 임신, 인두입질

### 행동적 징후

-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,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
- 타인, 동물,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
- 수면장애, (유뇨증, 유분증) 섭식장애(폭식증, 거식증)
- 위축, 환상, 퇴행행동,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
-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
- 방화/동물에게 잔혹함, 비행, 가출, 자기파괴적 행동

4) 방임 :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


### 신체적 징후

- 성장지연, 발달지체
- 기아, 영양실조,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
- 냄새 나는 의복, 청결하지 못한 외모
- 지속적인 피로, 나른함, 조는 행위

### 행동적 징후

- 음식을 구걸
- 비행 또는 도둑질
-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

### 3. 아동학대의 원인과 학대의 결과

구분	요인	결과
 개인	정신장애 / 학대경험 / 약물중독 /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/ 충동 /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학대로 인한 사망.</li> <li>✓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.</li> <li>✓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.</li> <li>✓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.</li> </ul>
 가족	빈곤, 실업 /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/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/ 가정폭력/ 부모-자녀간 애착부족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다른 가족의 죄책감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</li> <li>✓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</li> <li>✓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</li> <li>✓ 가출</li> </ul>
 사회	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/ 체벌의 수용 /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</li> <li>✓ 학교폭력, 비행, 자살이 증가함</li> <li>✓ 약물 남용 및 중독</li> <li>✓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.</li> </ul>

### 4. 아동학대 시 처벌

신체학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</li> <li>·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</li> </ul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아동복지법상</b>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 <p><b>처벌</b> → <b>형법상</b> 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.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,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.</p>
성학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</li> <li>·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,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,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, 성교를 하는 행위,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</li> </ul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아동복지법상</b> 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처벌</b> → <b>형법상</b> ·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,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강간(미수), 유사강간(미수), 강제추행(미수), 준강간, 미성년자약취/유인, 추행 등 목적 약취/유인,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.</b></p>

위 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

★ 아동 학대 신고요령 ★
<p>☞ <b>1STEP :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</li> <li>-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,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</li> <li>-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</li> </ul>
<p>☞ <b>2STEP : 아동학대 신고 112(2014.9.29.부로 112로 통합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</li> <li>- 학대 의심 내용, 아동 및 학대 행위자,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</li> <li>- 아동을 안정시키고,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</li> </ul>
<p>☞ <b>3STEP : 협력 및 지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</li> <li>-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: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</li> </ul>

2019. 11. 19.

배곧누리초등학교장